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따라 국가문화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우리 대학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라 한다.

② 우리 대학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에 둔다.

제3조(모집단위 및 신입생 기준 입학정원) ① 우리 대학은 전문학사과정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둔다.

1. 우리대학은 학문의 특성과 교육과정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스쿨제도를 운영하며, 스쿨은 하나 이상의 전공, 학과,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단위를 말한다.

2. 자율전공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설계 및 전공 선택권을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산업 기반 전공을 바탕으로 창의문화역량을 갖춘 콘텐츠 중심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스쿨제도와 자율전공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② 전문학사과정에 두는 전공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의한 정원 외 학생 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스쿨	모집단위	학제	입학정원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애니메이션스쿨	애니메이션전공	3년제	245	238
만화콘텐츠스쿨	웹툰만화콘텐츠전공	3년제	200	215
	웹소설창작전공	3년제	92	100
게임콘텐츠스쿨	게임전공	3년제	245	238
융합콘텐츠스쿨	융합콘텐츠창작전공	3년제	83	105
푸드스쿨	푸드전공	3년제	72	-
패션뷰티스타일스쿨	스타일리스트전공	3년제	60	70
공연예술스쿨	연출극작전공	3년제	5	10
	뮤지컬연기전공	3년제	25	25
	연극영상연기전공	3년제	45	45
	무대미술전공	3년제	50	50
자율전공		3년제	-	26
합계			1,122	1,122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스쿨	모집단위	학제	입학정원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애니메이션스쿨	애니메이션학과	1년제	59	59
만화콘텐츠스쿨	웹툰웹소설콘텐츠학과	1년제	50	50
게임콘텐츠스쿨	차세대게임콘텐츠학과	1년제	59	59
공연예술스쿨	공연예술학과	1년제	40	40
패션뷰티스타일스쿨	패션콘텐츠학과	1년제	16	16
합계			224	224

제4조(모집단위 없는 스쿨 및 전공 운영) 모집단위가 없는 스쿨 및 전공은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모집단위의 파트 운영) 모집단위별 세부운영을 위해 파트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정보보호) 학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학생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보관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7조(학업·가정의 양립 지원) 우리 대학은 학업·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학교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학업·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8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우리 대학 전문학사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③ 우리 대학은 재학연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9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 운영할 수 있으며 스쿨의 교육목적, 전공, 학습자 특성, 학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매 학년도 2학기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경우 학사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③ 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는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국경 공휴일, 일요일, 개교기념일로 한다. 단,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 수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총장은 비상 재해와 같은 매우 급한 사정이 발생할 때나 학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입학(신입학, 편입학)

제12조(입학시기) 입학(신입학, 편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21일) 이내로 한다.

- 제13조(입학자격)** ① 전문학사과정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 3년제를 졸업한자(입학학기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3조의3항의 모집단위와 관련 있는 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14조(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5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다음 각호 중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으로 선발한다.

구분	전문학사	학사
전형 내용	-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별 고사 - 면접 및 실기 고사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성적자료 - 대학별 고사 - 면접 및 실기 고사 - 기타 학사학위대학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6조(입학전형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전형관리는 학사학위대학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④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 ⑤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⑦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② 제15조(입학전형)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입학을 취소한다.

③ 우리 대학 학생으로서 2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18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 또는 2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1학기 또는 제3학년 1학기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교육부 편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 따라 제1학년 2학기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각 전공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만 허가한다.

③ 편입학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19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제적된 학생(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총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전공만 허가할 수 있다.

③ 폐과된 학과의 제적생은 부칙에 명기한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④ 재입학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서식에 의거 지정된 날짜 안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 등록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수강신청 및 강의

제21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재학연한 기간 중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이 재학연한 기간 중 학기에 개설된 경우는 중복으로 수강할 수 없다.

③ 수강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고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인이 확인하지 않아 수강신청내역의 착오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수강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④ 하위 학년의 학생이 상위학년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때는 스쿨 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할 수 있다.

⑤ 수강신청한 학점에 대해 학기당 1회의 한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수강신청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강신청학점을 취소할 때도 한 학기 수강신청 최소학점인 15학점 이상의 학점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학교에서 정한 수강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2조(자율선택 수강신청) ① 소속이 다른 스쿨 또는 전공(학과)의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에는 자율선택수강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며 한 학기당 학점에 관계없이 3과목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득이 그 이상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율선택 수강신청의 허가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당교수가 결정한다.

③ 자율선택 수강신청으로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은 이수구분을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며, 스쿨 성적사정회의 심의로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융합콘텐츠스쿨은 융합전공제 인정 교육과정 내 교과목의 학점취득시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하고 타스쿨학생들의 융합콘텐츠스쿨 교과목 학점취득시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제23조(재수강 신청) ① 학점 미취득 교과목 또는 성적등급 C+ 이하 취득 교과목은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졸업요건의 충족을 위해서 학점 미취득된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해당교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 대체과목인정표에 의거하여 대체 교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④ 재수강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다른 과목과 동일한 절차로 수강신청한다.

⑤ 재수강한 교과목의 최종 성적은 재수강 신청한 학기의 성적으로 한다.

제24조(수강지도 및 처리)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하며,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강의시간표) 강의시간표는 스쿨별로 작성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개강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대체과목) 당해 학기 이전의 재수강 과목이 폐강 또는 변경된 때에는 매 학년도 교육과정 편성보고서에 대체과목을 정하여 소정의 심의를 받아 확정해야 한다. 다만,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재수강과목이 폐강 또는 변경된 경우 재수강 대상 과목의 동일학년, 학기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제27조(교수요목) 매 학년도 교육과정편성보고서에 편성 교과목의 교수요목을 작성하여 소정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제28조(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매 학기 수업준비 일정에 맞추어 강의계획서를 학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수강 신청 시 학생이 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수요목에 근거하여 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계획서에 따른 시기와 수행준거에 따라 학생의 직무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③ 평가계획에는 20점 이상의 출석점수와 2회 이상의 직무역량평가점수를 반드시 포함한다. 직무역량평가의 시행시기와 횟수는 교수자가 강의계획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합동강의) 학교운영 및 교육상 필요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동강의를 할 수 있다.

제6장 학적변동

제30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당 수업일수 1/4(3주)를 초과하여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휴학을 신청하고, 지도교수와 상담해야 한다.

②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는 휴학 횟수는 3회까지로 한다. (단, 수업연한 초과자의 휴학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④ 휴학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1조(복학) ① 제30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자퇴 및 제적) ①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를 포함한 자퇴신청을 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퇴한 학생은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자퇴 및 제적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전과) ① 전과의 범위는 모집단위로 할 수 있으며, 1개 학기 이상을 등록 후 성적을 취득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전과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기타)이 상이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정된 사항은 학적부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제7장 교과 및 수업

제3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전공·교직교과로 구분하고, 전공의 특성에 따라 전공교과에 실험실습을 운영한다.

- ②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이에 포함될 수 없는 과목의 경우 일반선택(전공 및 교양의 영역인정 없이 학점만 인정)으로 둘 수 있다. 각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③ 실습학기제와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을 따른다.
- ④ 매 학년도 교육과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학, 전과, 유급 및 재입학자 등의 학적변동자는 학적변동 허가학기부터 해당 소속스쿨(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⑤ 대내외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 ⑥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⑦ 우리 대학의 설립취지와 교육이념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⑧ 다양한 형태의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형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융합전공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⑨ 스쿨내 전공별 모집단위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전공별 교육과정 연계가 가능하도록 연계전공을 운영할 수 있다.
- ⑩ 교육과정은 매학년도 시작 전에 스쿨에서 작성하여 교육과정편성지침의 절차에 따라 학기 개시일 1개월 전에 확정한다.

제36조(기타 교육과정) ①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기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자매대학 연구 및 공동교육과정
2. 해외교육기관 연수 및 교육과정
3. 해외인턴십 교육과정
4.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5. 기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과정(또는 프로그램)
6. 대학과목선 이수제 교육과정

② 제1항에 의한 교육과정의 학점인정,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인정 등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37조(특별과정 운영) ① 우리 대학에는 1년 이내의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과정은 우리 대학에 설치된 전공과 유사한 분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8조(시간제 등록생 운영) ① 우리 대학에서는 일반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전공만 시간제 등록생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과는 모집할 수 없다.

② 시간제 등록생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 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④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시간제 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12학점(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39조(학점은행제) ① 우리 대학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여 78학점(3년제의 경우 117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우리 대학에서 48학점 (3년제의 경우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우리 대학에서 36학점(3년제의 경우 4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여야 한다.

② 기타 학점인정과정의 설치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① 우리 대학에는 고등교육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41조(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및 산업체 위탁교육) ① 우리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연도 모집요강에 정하는 기간동안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경우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및 외국대학과의 공동운영) ①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계 고등학교·대학·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제21조 ①항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대학과 전문학사학위 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제50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국대학과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제43조(교과 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편성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점 당 시수비율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매 학기(학년도를 2학기로 운영하는 경우) 수강신청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위	수강신청학점	수강학점조정신청 학점	
		최소학점	최대학점
전문학사	15~22	10	25
학사	8~19	-	-

- ③ 수강학점조정은 수업연한 중 1회만 가능하며,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학생이 신청 후, 소관 부서장이 승인한다.
- ④ 원격교육 및 이러닝강좌 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 제44조(계절수업)**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하로 한다.
- ③ 계절수업은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④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 제45조(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① 고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이를 우리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국내외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국내외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교 학습과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특정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인정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 이내로 한다.
- ③ 정원 외 전형 전문대졸이상자로 입학한 학생만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 과목을 교양선택과목으로 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④ 고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하여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최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에 따른 창업실습교과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⑥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 ⑦ 우리 대학과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교류협정에 의한 원격수업의 경우 졸업 전까지 교과영역의 구분없이 12학

점의 한도 내에서 인정한다.

⑧ 학교는 학기 동안 학생이 자기주도적 진로 활동을 설계, 수행하고 이를 평가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진로탐색학점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46조(집중수업)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으며 집중수업에 관한 지침 이외의 기타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47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원격수업)에 의한 수업, 주말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에 따르며, 세부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매 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③ 산업체위탁, 계약학과 외 정규과정에 입학한 산업체재직자 등의 성인학습자 재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별도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감염증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우면,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인정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 등의 기준을 총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을 기준으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 교원은 학점당 15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학점당 이수시간 내에서 학습자, 교과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학기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운영(변경)할 수 있다.

제49조(교직과목 개설 및 이수) 교직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목으로 하며,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자격검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교직과정 운영)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르며, 이에 따른 심의를 위해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제51조(다전공제 운영) 전공별 부전공 및 복수전공,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등의 다전공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8장 성적평가, 진급, 졸업

제52조(평가시험) ① 각 교과목 총 수업 시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는 스쿨원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53조(성적 및 취소)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및 기타 이에 따르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스쿨학생성적평가위원회를 두고 특성에 맞게 성적사정회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③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나 부정행위로 취득한 경우 성적을 취소한다.

제54조(진급 및 유급) ① 이전 학년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위학년에 진급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진급사정회에서 결정된 자로 한다.

② 진급 및 유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55조(학사경고) ① 성적평가 결과 평점평균 1.0 미만의 학생에게는 학기별 학습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학사경고를 성적표에 표기하며, 지도교수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여 학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② 학사경고자에 대한 후속조치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56조(수업연한 초과 졸업) ① 졸업대상자 중 수업연한 내 졸업에 충족되는 학점을 미취득 하면 수업연한 초과 졸업에 해당한다.

② 취득학점이 78학점(2년제), 117학점(3년제) 이상인 학생이라도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학점을 미취득 하였을 경우 수업연한 초과 졸업에 해당한다.

③ 수업연한 초과 졸업학년도는 전기 졸업학년도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제57조(졸업, 수료, 취소, (전문)학사학위취득유예)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에 충족하거나 제 51조에 의하여 다전공제를 이수한 자는 전공명을 표기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졸업요건에 따라 전공별 졸업이수학점 등을 별표 2에 따라 스쿨원장이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학위	학년제	이수학점(최소 전공학점)	교양학점(필수)	비고
전문학사	2년제	78(50)	8(4)	
	3년제	117(80)	10(4)	
학사	1년제	137		기 취득 117학점 이내 포함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위	1학년 수료	2학년 수료	3학년 수료
전문학사	39학점 이상	78학점 이상	117학점 이상
학사	137학점 이상 (전문학사과정 117학점 인정 포함)	-	-

③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졸업할 수 있다.

④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학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졸업학점이 충족된 학생이 졸업사정 전까지 (전문)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 1년간 (전문)학사학위취득유예가 가능하며, (전문)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되면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58조(명예학위 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우리 대학의 명예를 높였거나 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9장 학생활동

제59조(학생회와 학생단체 조직) 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에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업 및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교육목적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정당 또는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 거부,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 등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제62조(학생지도와 상담) ①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자치 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별도 규정을 따른다.

③ 학생의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④ 총장은 학생집단 활동 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행위(가해)자 및 연대책임자(교수, 학생)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⑤ 학생은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검사와 상담을 받아 건전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63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64조(언론 활동 보장) ① 대학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언론 활동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언론 활동 및 보장을 위하여 언론기구를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상벌) 학생의 상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10장 등록금

제66조(등록금) ①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등록 시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학기 단위는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등록금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납입금) 등록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68조(등록금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 된 금액 전액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3. 재적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6. 재학 중인 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②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의 반환은 다음 각호와 같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7조에 의해 입학이 취소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장학금수혜자에게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금 총액에서 장학금 수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②항에 의해 반환한다. 다만,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장학금 수혜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9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0조(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 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제①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 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장 장학금

- 제71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생에게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을 따른다.
- 제72조(장애학생 지원)** 총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장학 및 수업, 학생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12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 제73조(교수회)** ① 우리 대학에 교수회를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할 수 있다.
- ②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 ③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제74조(교무위원회)** ① 우리 대학의 전문학사 과정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 제75조(대학평의위원회)** ① 우리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평의위원회 구성은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③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제76조(교원양성위원회)** ① 우리 대학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 ② 교원양성위원회의 구성은 교직과정 규정에서 정한다.
- ③ 교원양성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행 사항
 2. 교원자격 관련 교육과정 개발·편성 및 운영 사항
 3.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에 관한 사항

- 제77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우리 대학 등록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

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세부사항은 등록금 심의위원회규정에서 정한다.

제78조(기타 제위원회) ① 우리대학은 구성원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대학행정의 중요 사항을 심의, 논의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장 직제

제79조(교직원) ① 우리 대학에는 총장, 교원과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교원의 임용 및 업적평가 등 교원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80조(직제) ① 우리 대학의 행정조직은 전략지원처, 교육개발처, 인재개발처, 교육지원처, 미래원, 산학취업처로 구성하며, 총장직속기관과 부처별로 필요한 기타 부서(부속기관 등)를 둘 수 있다.

② 각 행정조직에 부서장, 팀장, 실장을 둘 수 있다. 부서장, 팀장, 실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각 행정조직, 스쿨행정실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④ 각 스쿨에는 원장을, 학과에는 학과장을 두며, 원장 및 학과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조직을 구성하고 책임교수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교양교육의 편성과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 교양교육원(리케이온)을 둘 수 있다.

⑥ 본조 1항의 총장직속기관과 부속기관은 다음 표와 같다

총장직속기관	부속기관		
브랜딩센터, 인권성평등센터	청강뮤지엄	문화정보센터	스마트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과정혁신센터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운영센터	학생상담센터
	기숙사	보건실	예비군대대
	성과관리센터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외협력센터	문화콘텐츠아카데미
	메이커스랩	평생교육원	관리센터
	전자계산소		

제81조(산학협력단) ① 우리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총장이 임명하며, 이 법인의 수입과 지출은 별도의 회계로 운영한다.

③ 총장은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가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1조의2(학교기업) ① 우리 대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 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전공 및 교육과정의 연계, 현장실습, 결산시 이익금 또는 손실금의 처리기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2조(도서관 운영) ① 도서관은「대학도서관진흥법」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다음 각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1.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학도서관 운영사항
2.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 훈련시간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 예산, 조직, 시설과 도서관 자료에 관한 사항

② 도서관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83조(인권·성평등센터) 우리 대학은 구성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함한 인권의 보호와 침해 행위 예방을 위하여 인권·성평등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84조(전공(학과) 통폐합) 전공(학과)의 통폐합은 대학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르며,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다.

제14장 자체평가

제85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우리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 공시정보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15장 학칙 제·개정절차

- 제86조(학칙 제·개정안의 공고, 의견제출, 심의, 공포) ① 학칙을 제·개정을 할 때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 ③ 우리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반 학칙의 개정안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공포 및 시행한다.

제16장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08월 09일부터 시행한다.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네트워크과의 재적생은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멀티미디어제작과, 컴퓨터서비스과, 표면디자인과, 식품공업과의 재적생을 개편된 재적생으로 본다.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청강문화산업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따라 청강문화산업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전문학사학위는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컴퓨터그래픽과의 재적생을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건강식품과학과의 재적생을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미디어영어과의 재적생을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도자디자인과의 재적생을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공연산업계열 무대공연전공, 식품생명과학과, 비즈니스영어과의 재적생을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리빙세라믹디자인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도자디자인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컴퓨터네트워크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모바일네트워크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인터넷비즈니스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e비즈니스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만화창작과의 경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2년으로 적용하며,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2년제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0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모바일네트워크과 재적생은 사이버보안과 재적생으로 본다.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컴퓨터소프트웨어과, e-비즈니스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정당한 사유로 201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컴퓨터정보과, 물류유통정보과 재적생으로 본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컴퓨터게임과의 경우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2년으로 적용하며,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2년제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한다.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3D그래픽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정당한 사유로 2011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애니메이션과 재적생으로 본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은 고시일(2009.10.07) 이후에 복학한 학생에 한하며, 고시일 이전에 복학한 학생은 3년제 교육과정을 운영 중임에도 2년제로 졸업하여야 한다.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씨피스디자인과의 재적생은 패션디자인과 재적생으로 본다. 단, 이 학칙 시행당시 씨피스디자인과 2학년 재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도자디자인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학과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이 학칙 시행당시 컴퓨터정보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학과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이 학칙 시행당시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의 도자디자인학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른 학과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사이버보안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사이버정보보안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중국IT비즈니스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글로벌IT비즈니스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개편 및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① 학과개편 및 폐과로 인한 다른 학과로의 소속변경 시 유아교육과로의 소속변경은 제외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개편 및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2011학년도		2010학년도	비 고
스 쿨	모집단위	학 과	
콘텐츠	애니메이션전공	애니메이션과 디지털영상디자인과 3D그래픽과	
	만화창작전공	만화창작 만화일러스트레이션과	
	컴퓨터게임전공	컴퓨터게임과 e스포츠게임과	
에코라이프	에코스타일리스트전공	플로랄디자인과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푸드스타일리스트과	
	에코디자인전공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 캐릭터산업디자인과	

	식품영양전공	식품과학과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패션	패션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과	
	패션스타일리스트전공	써피스디자인과	
뮤지컬	뮤지컬연기전공	뮤지컬과	
	무대미술전공	무대미술과	
모바일	이동통신전공	이동통신과	
	스마트폰전공	-	
	모바일보안전공	사이버정보보안과	
2011 모집정지	-	관광영어과	2013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학과 유지
	-	물류유통정보과	
	-	글로벌IT비즈니스과	
2010 모집정지	-	도자디자인과	2012학년도까지 학과 유지
	-	컴퓨터정보과	
	-	써피스디자인과	
2009 모집정지	-	3D 그래픽과	

① 스쿨단위로 학과를 재편함에 따라 기존 학과는 「학과개편 현황」 내용대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 2011학년도에 모집을 정지하는 학과의 경우 해당 학과로 졸업할 수 있도록 2013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학과를 유지한다. 단, 2009학년도에 모집을 정지한 3D그래픽과 재적생의 경우 2011학년도 2학년 재학생과 2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3D그래픽과 또는 애니메이션과를 선택할 수 있고, 1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③ 2010학년도에 모집을 정지한 써피스디자인과 재적생의 경우 패션디자인전공 또는 패션스타일리스트전공 재적생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속을 변경한다.

④ 모집을 정지하는 전공(과)의 복학생의 경우 전공(과)유지 기간 이후에는 학생이 원하는 전공(과)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고, 전공(과) 유지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해당학기 전과 정원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전공(과)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유아교육과로는 교원수급 적정인원 유지 및 교직과정 이수 자격부여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소속을 변경할 수 없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모집단위 명칭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① 모집단위(전공, 과) 변경 명칭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에코스타일리스트전공의 에코가드닝 코스 재적생은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재적생으로, 카페매니지먼트 코스 재적생은 카페&베이커리전공 재적생으로, 핸드메이드크래프트코스 재적생은 에코디자인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컴퓨터게임전공 재적생은 게임전공 재적생으로, 카페&베이커리 재적생은 외식경영 전공 재적생으로, 패션스타일리스트전공 재적생은 스타일리스트 재적생으로 본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뮤지컬연기전공, 무대미술전공 재적생은 뮤지컬스쿨 재적생으로 이동통신전공 재적생은 모바일통신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에코디자인 전공 재적생의 경우 게임콘텐츠스쿨로 소속을 변경하며, 해당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2015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전공을 유지한다. 복학생의 경우 전공(과) 유지 기간 이후에는 학생이 원하는 전공(과)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고, 전공(과) 유지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해당학기 전과 정원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전공(과)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2016학년도 모집을 정지한 스마트폰전공의 경우 해당 전공을 졸업할 수 있도록 2018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전공을 유지한다. 이 기간에 복학 및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모바일스쿨 내 희망하는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고, 전공 유지 기간 이후에는 해당 학기 전과 정원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2017학년도 모집을 정지한 모바일보안전공의 경우 해당 전공을 졸업할 수 있도록 2019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전공을 유지한다. 이 기간에 복학 및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모바일스쿨내 희망하는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고, 전공 유지 기간 이후에는 해당 학기 전과 정원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2016학년도까지 모집단위 푸드스쿨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선택한 스쿨 내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푸드스쿨 내 4개의 전공(조리, 식품영양, 푸드스타일리

스트, 외식경영)을 2018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유지한다. 이 기간에 복학 및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 2017학년도에 신설된 푸드스쿨 내 5개의 전공(조리, 식품영양, 카페베이커리, 팜푸드비즈니스, 푸드콘텐츠)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1개를 선택하여 소속을 변경할 수 있고, 기존의 세부전공(조리, 식품영양, 푸드스타일리스트, 외식경영) 유지기간 이후에는 해당 학기 전과 정원과 관계없이 신규 세부전공(조리, 식품영양, 카페베이커리, 팜푸드비즈니스, 푸드콘텐츠) 중 희망하는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교양과목 중 구 교육과정을 이수했던 휴학생이 복학하였을 때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구 교육과정의 교양필수과목이 신 교육과정에 설치되지 않는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② 전공필수 중 동일 교과목이 학점 변경된 후 그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당해학기 학점으로 인정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학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졸업 이수 학점 및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조정에 대한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이후	
	졸업학점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졸업학점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졸업학점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1학년	117학점(3년제) 78학점(2년제)	22학점	117학점(3년제) 78학점(2년제)	22학점	117학점(3년제) 78학점(2년제)	22학점
2학년	120학점(3년제) 80학점(2년제)	24학점	117학점(3년제) 78학점(2년제)	22학점	117학점(3년제) 78학점(2년제)	22학점
3학년	120학점(3년제) 80학점(2년제)	24학점	120학점(3년제) 80학점(2년제)	24학점	117학점(3년제) 78학점(2년제)	22학점

※ 각 학년도의 학적변동자는 학적변동 학년의 경과조치를 따름
 ※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학점 조정으로 인한 수강학점조정신청에 관한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스쿨 전공 통합으로 인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2019학년도 분리 모집한 조리, 카페베이커리, 식품영양, 푸드콘텐츠, 팜푸드비즈니스전공이 푸드스쿨로 통합됨에 따라 2020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전공을 유지한다. 전공유지기간 이후에 복학하는 학생들은 푸드스쿨로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유지기간 이후에도 학생이 전공 유지를 희망하면 유지할 수 있다.

② 2018학년도 이전 푸드스쿨로 입학하여 세부전공을 선택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 푸드스쿨의 통합 교육과정을 따르며, 세부전공은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로 판단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① 2021학년도 모집을 정지한 유아교육과의 경우 해당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2023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전공을 유지한다.

② 2021학년도 모집을 정지한 스마트미디어전공의 경우 해당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2023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전공을 유지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전공명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전공명이 변경된 재적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소속을 변경한다.
(단, 학생이 전공 유지를 희망할 경우, 유지할 수 있다.)

스쿨	전공명(변경전)	전공명(변경후)	비고
만화콘텐츠스쿨	만화창작전공	웹툰만화콘텐츠전공	
푸드스쿨	조리전공	3학년: 푸드스쿨전공 1, 2학년: 푸드전공	
	카페베이커리전공		
	푸드콘텐츠전공		
	팝푸드비즈니스전공		
패션뷰티스타일스쿨	패션메이커스스타일리스트전공	스타일리스트전공	
	패션스쿨	스타일리스트전공	
공연예술스쿨	뮤지컬전공	뮤지컬연기전공	세부전공에 따른 전공명 변경
	연극영상전공	연극영상연기전공	
	뮤지컬스쿨	뮤지컬연기전공	
		연극영상연기전공	
		연출극작전공	
	무대미술전공		
	패션메이커스비즈니스학과	패션콘텐츠학과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① 2022학년도 모집을 정지한 패션메이커스전공의 경우 해당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2023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전공을 유지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2023학년도 모집을 정지한 모바일통신전공의 경우 해당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전공을 유지한다. 전공 유지 기간 이후에는 해당 학기 전과 정원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① 2023학년도 모집을 정지한 만화애니게임학과의 경우 2023학년도 복학생부터 웹툰웹소설콘텐츠학과, 애니메이션학과, 차세대게임콘텐츠학과로 휴학 당시 세부전공 소속에 따라 변경된다.

(전공명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전공명이 변경된 푸드스쿨전공의 재적생은 푸드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① 2025학년도 모집을 정지한 푸드전공은 2027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전공을 유지하며, 유지 기간 이후에는 전과 정원과 관계없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모집정지 후 전공 유지가 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하는 복학과 재입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위명칭

종별	해당전공(과)
문화콘텐츠전문학사	애니메이션전공, 만화창작전공, 웹툰만화콘텐츠전공, 웹소설창작전공
게임콘텐츠전문학사	게임전공
조리전문학사	조리전공
식품영양전문학사	식품영양전공
외식경영전문학사	외식경영전공
산업예술전문학사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제과제빵전문학사	카페베이커리전공
푸드산업전문학사	팜푸드비즈니스전공, 푸드콘텐츠전공, 푸드스쿨전공, 푸드전공
패션디자인전문학사	패션디자인전공
패션전문학사	패션스쿨전공, 패션메이커스타일리스트전공, 패션메이커스전공
패션뷰티전문학사	스타일리스트전공
공연예술전문학사	뮤지컬연기전공, 연극영상연기전공, 무대미술전공(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음향디자인), 연출극작전공, 뮤지컬전공, 연극영상전공
공업전문학사	모바일통신전공, 스마트폰전공, 모바일보안전공
스마트콘텐츠전문학사	스마트미디어전공
교육전문학사	유아교육과
융합콘텐츠전문학사	융합콘텐츠창작전공
문화콘텐츠학사	애니메이션학과, 웹툰웹소설콘텐츠학과
게임콘텐츠학사	차세대게임콘텐츠학과
공연예술학사	공연예술학과
패션콘텐츠학사	패션콘텐츠학과

별표 2. 스쿨별 규정 주요 내용

1. 졸업요건

전공	전공학점 요건	비고
애니메이션전공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정의된 교과목 중 2과목 이상 수강(2024년 졸업자부터 적용)
웹소설창작전공		스쿨 졸업심사에 통과한 자
융합콘텐츠창작전공	70학점 이상	
모바일통신전공	50학점 이상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스마트폰전공		
모바일보안전공		
스마트미디어전공	0학점 이상	

2. 2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요건

구분	이수학점	취득요건
전공	50학점 이상	졸업까지 평균 75점 이상(기본이수 과목 7과목, 교과교육 3과목 필수)
교직	22학점	졸업까지 평균 80점 이상(전 과목 필수)
교직인적성 검사		졸업까지 2회 통과(70점) 이상
응급처치		졸업까지 2회 수료(수료증 취득)
<p>1. 2019학번부터 대학교양 이수를 위하여, 학과교양 필수과목으로 개설한 [교직인성 리더십 I 자기개발], [교직인성 리더십 II 대인관계], [교직인성 리더십 III 교직원], [교직인성 리더십 IV 공동체] 등 2학점 과목 4과목을 이수하고, 교양교육원(리케이온) 개설과목 중에서 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총 10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해 유아교육과 대체과목 인정표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p> <p>2. 유아교육과의 모집정지로 인해 유아교육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p>		

[별지 제1호]

제 호

학 위 증 서

심 생 스 전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람은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전공
○년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고등교육법 제50조
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학위등록번호 : 청강 - ○○○○ - ○○○○

[별지 제2호]

제 호

학 위 증 서

심 생 스 전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람은 본 대학의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 과 ○
년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에 따라 ○○○학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학위등록번호 : 청강 - ○○○○ - ○○○○

[별지 제3호]

제 호

수료증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소정의

전문학사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별지 제4호]

제 호

수료증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소정의

학사 전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